

Intelligence 기반 정밀 부품·장비 시스템엔지니어양성 사업팀 [Team for Intelligent Precision System: TIPS]

운영내규

2020. 11

전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전북대학교

Intelligence 기반 정밀 부품·장비 시스템엔지니어양성 사업팀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전북대학교(이하 “본교”) 기계시스템공학과 ‘Intelligence 기반 정밀 부품·장비 시스템엔지니어양성 사업팀’ (이하 TIPS(Team for Intelligent Precision System))의 교육, 연구, 인사, 장학 및 사업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팀의 목표는 Intelligence 기반 정밀 부품·장비 시스템 핵심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BK21-FOUR사업”은 교육부가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4단계 두뇌한국(Brain Korea)21 사업을 말한다.
2. “운영”이라 함은 BK21-FOUR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팀의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운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TIPS에 참여하는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직원 및 본 사업팀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사업팀의 구성

제4조(사업팀장) ①사업팀장은 1명으로 하고 사업팀에서 추천하고 교육부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팀의 대표
2. 사업팀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3. 기타 사업팀 업무 총괄

②사업팀장의 임기는 TIPS의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팀장의 권한) ①사업팀장은 사업팀 참여교수의 진·출입 관리, 신입교수 증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②사업팀장은 사업팀의 예산운영 및 조정,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

③사업팀장은 참여학과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생 모집 전형 등의 학사 권한을 가진다.

④사업팀장은 참여교수 간 경쟁체계 및 차등 보상체계 구축, 미 참여 교수 및 지도학생 차등 지원체계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사업팀 구성) ①본 사업팀은 사업추진에 부합하는 교육지원부, 학술연구부, 산학협력부 등의 실무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업팀장은 사업팀 운영을 고려하여 참여교수를 각 부서에 배정하고 부서의 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참여교수) 참여교수는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로서 교육부로부터 BK21-FOUR사업 참여교수로 허락

된 자료 한다.

제8조(참여교수의 임면 및 교체) ① TIPS는 4단계 BK21 사업 훈령 지침 제26조(참여교수)에 따라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본 사업팀에 새로이 참여하는 교수는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연구 실적(논문, 특허, 연구비)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학과 내 교수들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경쟁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참여교수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참여교수가 본 사업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참여교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팀의 사업에 태만한 경우
4. 참여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된 행위를 한 경우

③ 사업팀장은 위의 각 호의 경우 외에도 본 사업팀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필요한 미참여교수가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미참여교수를 사업팀에 기여도가 적은 참여교수와 교체할 수 있다.

④ 참여교수에게 BK21-FOUR사업기간 동안 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 내지 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교수 자격을 상실한다.

[별첨1]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제9조(신진연구인력의 임용) ① TIPS는 사업팀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BK21-FOUR 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하여 신진연구인력을 지원한다.

② 계약교수는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라, 교육 및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후연구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로 이종소속(타 대학 및 기관소속 휴직 및 연구년 중인 자 포함) 및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은 제한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채용원칙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기간은 계약교수, 박사후연구원 각 1년 이상 2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임용절차는 인터넷(또는 일간지)에 공고한 후, 지원서를 접수하고 사업팀장의 면접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임용 추천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기준은 연구역량 및 업적, 사업팀 목표와 전공분야의 합치 정도, 연구분야의 유관성 확보, 연구의 국제화 및 학제간 연구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계약교수, 박사후연구원이 국립대학교 교원의 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임무를 부당하게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 감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신진연구인력의 임무) ① 계약교수와 박사후연구원은 TIPS의 목적에 따라 성실히 연구 및 사업팀 운영에 관한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② 계약교수와 박사후연구원은 TIPS의 연구과제와 TIPS가 주관하는 연구관련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계약교수와 박사후연구원은 연구영역에 따라 TIPS 참여대학원생의 사업팀 과제연구를 지도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사업팀은 매학기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주 40시간 이상 교육, 연구 투입가능)으로서 입학 후 석사 2년, 박사 4년, 통합과정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의 정의: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③ 지원대학원생의 정의 및 지원범위: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하여 연구장학금 수혜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④ 참여대학원생은 BK21-FOUR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BK21-FOUR 사업이 요구하는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된다.

⑤ 참여대학원생들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를 지니며, 향후 진로 현황분석을 위해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매학기 참여대학원생 업적 평가기준에 의해 연구 및 교육 업적에 관한 평가를 받으며, 사업팀은 상호간 경쟁을 통해 지원대학원생을 선발 지원하여야 한다.

⑦ 지도교수가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교육 및 연구태도와 자질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교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교체대상자 중 학습 개선의 여지가 있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재선정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⑧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학기당 6학점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학점은 출강학점을 의미(진료 등 의료행위 금지)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사업팀은 사업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 및 팀장이 위촉하는 부장교수와 사업팀 계약교수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결산 심의 의결
2. 사업계획 기획 및 운영
3. 기타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팀은 BK21-FOUR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하기와 같은 항목에 대해 사업팀을 평가한다.

1. 사업팀의 교육 비전 및 목표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3. 대학원생 연구역량
4. 교육의 국제화 전략
5. 사업팀의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6. 연구진의 구성
7.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8. 참여교수 연구역량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팀장, 참여교수, 외부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업팀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사업팀 운영 및 참여교수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은 본 사업팀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4조(사업팀 전담직원)

- ① 사업팀 전담 직원은 본교 학사연구원임용규정에 따라 채용한다.
- ②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행정능력 및 사업팀 운영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사업팀 전담 직원은 행정능력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 ④ 사업팀 전담 직원의 재임용 평가기간은 임용기간(1년) 기준이며, 평가시기는 임용기간의 마지막 달로 사업팀 행정 기여도 등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사업팀 전담 직원은 본 사업팀의 목적에 따라 성실히 행정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⑥ 사업팀 전담 직원이 담당할 행정업무에는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지급관련 업무,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보조, 사업단 website 관리, 사업팀 운영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수합 및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장 참여인력 업적 평가

제15조(교수업적평가) ① 사업팀은 본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준수하며, 사업팀 특성에 맞는 평가내용 및 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팀 참여교수는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적용받는다.

③ 사업팀 전체 참여교수의 평균 업적평가 총점의 50% 대비, 참여교수의 업적평가총점이 2년간 연속 미달 시, 지도 학생의 사업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사업팀 운영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년 더 유예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단, 2020년 12월 이후에 임용된 신입교수의 경우, 연구실 setup 및 대학원생 확보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사업팀 운영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2년 더 유예의 기회를 줄 수 있음)

[별첨2] 참여교수 업적평가 기준

제16조(신진연구인력 평가) ① 신진연구인력의 평가대상은 BK21-FOUR 사업팀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Post-Doc.) 전원이며, 평가대상기간은 임용기간(1년 기준)이다.

② 평가시기는 매 학년도 말(2월)로써, 평가항목은 연구업적(국제학술지, 전국규모 학술지, 저서, 학술회의

발표, 기타 연구업적), 연구단 기여도이다.

③ 평가방법은 연구업적의 양과 질, 연구단 사업의 구체적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팀장이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17조(참여대학원생 평가) ①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매년 업적 평가를 받는다.

② 참여 대학원생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또는 차학기) 지원금액을 차등 결정할 수 있으며, 우수 학생에게는 사업팀장이 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팀장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교육 및 연구태도와 자질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참여대학원생은 교체(면직)처리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은 BK21-FOUR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전원으로써 기본적인 평가대상기간은 1개 학기(6개월), 평가 시기는 매 학기말(8월, 2월)로 한다. [사업팀 운영상황에 따라 평가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별첨3] 참여대학원생 업적평가 기준

제4장 참여인력 업적 평가의 환류

제18조(인센티브) ① TIPS는 본 사업팀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의 본 사업팀의 사업에 기여도와 연구업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대상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 성과 기여도와 사업팀 운영 봉사업적을 사업팀장이 평가하여 결정한다.

③ 인센티브는 개별사업 연도의 마지막달인 2월에 집행하며 당해연도 사업 예산 집행을 고려하여 사업팀장이 인센티브 총액을 결정하고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해 인센티브를 집행을 결정한다.

[별첨4]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규정

제5장 연구 및 교육

제19조(참여교수의 연구 및 교육의무) 참여교수는 본 사업팀의 목적에 따라 연구와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국제협력연구)

① 본 사업팀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제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학술활동 및 국제연수를 기획하고 지원한다.

② 국제협력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학술대회 : 참가국 수가 4개국 이상(한국포함)의 학술대회로서, 총 구두발표논문이 20건 이상이어야 하며,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외국기관 소속) 논문 비율이 50% 이상인 학술대회
2. 해외석학초빙 강연 : 국제적 저명학자의 본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대상 강연 (해외석학의 기준은 web of science h-index 15이상인 학자를 대상으로 함)
3. 장기 혹은 단기 해외연수 등 (장기 및 단기 해외연수 기준은 BK21-FOUR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제21조 (장기해외연수)

① 장기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4년이 경과하지 않은 박사과정,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사과정 참여 대학원생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사업팀장이 인정하는 자
2. 다음의 어학 검정기준 이상인 자, 다만 사업팀장이 다음의 어학 검정기준 이상의 어학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학 검정증명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어학 검정기준
TOEFL: 550점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
토익 700점 이상
중국어: HSK 6급 이상
일본어: JPT 2급 이상

- ②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기해외연수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장기연수자는 BK21-FOUR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및 본 사업팀 기준에 따른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업팀의 다른 재정적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제22조 (단기해외연수)

- ① 단기해외연수의 인정범위는 BK21-FOUR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연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② 단기해외연수자는 BK21-FOUR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및 본 사업팀 기준에 따른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업팀의 다른 재정적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③ 단기해외연수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적 수준의 학회 및 대학이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연구 논문이나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2. 해외 저명 교수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3. 4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적 수준의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4. 사업단장이 사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단기해외연수 학생선발기준은 제17조 참여대학원생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결과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기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 ⑤ 본 사업팀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획한 단기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단기해외연수에 준하여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사업비 집행관리

제23조 (재정 및 회계 연도)

- ① 본 사업팀의 재원은 정부로부터 BK21-FOUR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다.
- ②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에 따른다.
- ③ 재정 및 회계에 관하여 본 운영규정에 없는 경우는 전북대학교 BK21-FOUR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참여대학원생 지원)

- ① 본 사업팀은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BK21-FOUR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연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 ② BK21-FOUR 참여대학원생의 수와 지원금의 액수는 위 조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하고, BK21-FOUR 참여대학원생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대학원생에게는 차학기 장학금 배정시 차등지급할 수 있다.
- ③ 참여대학원생 중 SCI급 논문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별첨5]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지급기준

제25조 (신진연구인력 지원)

- ①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로 월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 ② SCI급 논문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국제협력)

- ① 단기해외연수의 경우, 사업팀장은 연수에 참여하는 대학원생과 교수에게 BK21-FOUR사업 및 교내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 ③ 장기해외연수의 지원금은 기간에 따른 BK21-FOUR사업 및 교내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장기해외연수생의 지원기간은 15일 초과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장, 단기 국제화지원비에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팀에 지원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여비 지급 신청서 1부(본교 양식)

항공권 INVOICE 1부

학술대회 등록비 서류 1부

학술대회 관련된 내용 1부(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기준 확인서, 발표논문 및 학술 회의 팸플릿(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학회 accept letter 등)

숙박비 서류 1부

- ⑤ 학회를 포함한 장, 단기 연수를 다녀온 후, 출장 보고서를 제출 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회에 실린 포스터 또는 구두 발표 내용(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논문 게재 부분) 사본 1부
학술대회 등록비 영수증 1부

여권 입출국 도장 사본 1부

비행기 보딩패스(e-ticket 혹은 항공 ticket) 원본 1부

- ⑥ 상기 ④와 ⑤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국외여비 규정에 따른다.

- ⑦ 해외석학초빙의 경우 항공료, 체재비, 강사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해외석학의 기준은 web of science h-index 15이상 인 학자를 대상으로 함).

단기(1개월 이내) 초빙은 학생을 집중지도하거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본 사업팀내에서 초빙된

해외석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본 사업팀 참여대학원생의 공동 논문 지도 및 공동 학위 지도

본 사업팀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월 1회의 강연(회당 1시간 이상)

본 사업팀 참여교수와의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

6개월 이상 초빙된 석학의 경우, 본 사업팀 소속 학과에서, 학기당 3학점(1강좌) 강의

해외학자의 강연료는 소득 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 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별첨6] 국제협력경비 지원지침

제27조 (국내여비)

① 본 사업팀 국내여비의 경우는 BK21-FOUR사업 및 교내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한다.

② 여비 신청 시, 제출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학회 등록 서류 1부

학회 관련 내용 1부 사본 복사

학회 보고서 1부

③ 학회 다녀온 후, 출장 보고서를 제출 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학회에 실린 포스터 또는 구두 발표 내용 사본 1부

교통비, 일비 사용 영수증 처리

학회 이름표 1부

제28조 (학술활동 지원비)

① 본 사업팀 학술활동 지원비는 BK21-FOUR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한다.

② 학술활동 지원비는 학회 등록(국내외) 등을 비롯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외부 초청 강연자의 강연료를 BK21-FOUR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여 지급한다.

제29조 (회의비)

① 본 사업팀 회의비는 BK21-FOUR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한다.

② 회의비를 사용하면 반드시 연구팀에 영수증 원본과 회의를 진행한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30조 (인센티브)

① 본 사업팀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원시기는 사업팀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내는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연간 사업 종료시점인 2월로 한다.

[사업팀의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③ 참여교수의 인센티브는 참여교수의 교육·연구성과 및 사업팀 봉사 기여도를 상대 평가하여 지급한다.

④ 모든 인센티브는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후 지급한다.

제7장 기타

제31조(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업팀 회의에서 의결한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일반 법원리에 따른다.

제32조(해산) 본 사업팀은 BK21-FOUR사업이 완료되는 날로 해산한다.

제33조(기타사항) 이 내규의 시행과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내규로 정한다.

Intelligence 기반 정밀 부품·장비 시스템엔지니어양성 사업팀 세부 운영 지침

[첨부1]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첨부2] 참여교수 업적평가 기준

[첨부3] 참여대학원생 업적평가 기준

[첨부4]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규정

[첨부5] 대학원생 인건비 지급 기준

[첨부6] 국제협력경비 지원지침

[첨부1]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1) 참여교수 선정 기준

가. 전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대학원 전체 교수 중 학과 내부검토를 통해 총 7명의 교수가 참여함
(참여교수의 수는 2020년 선정당시 기준인 최소 7명으로 운영되며, 내부평가를 통해 증가할 수 있음)

(2) 참여교수 교체 기준

가. 참여교수 업적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매년 참여교수 및 미참여교수의 업적을 평가한 뒤 2명 이내의 교체 대상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미참여교수 중 임용 3년 이내의 신입교수는 논문 및 특허실적만을 적용하고 다른 항목은 사업팀 평균을 부여하여 업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때 필요에 따라 업적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첨부2] 참여교수 업적평가 기준 [가중치는 사업팀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교육 (30%)	지도학생 국제SCI(E) 논문	<u>SCI(E) 환산편수</u> 사업단평균	-총 기여도 상대평가의 10% 로 평가
	지도학생 학술대회 발표	<u>학술대회논문환산편수</u> 사업단평균	-총 기여도 상대평가의 5% 로 평가
	신규교과 개발	신규교과 개설 또는 MOOC 콘텐츠 개발 기여도	-총 기여도 상대평가의 10% 로 평가
	대학원생 배출인원 대비 취업률	대학원생 배출인원 대비 취업률 기여도	-총 기여도 상대평가의 5%로 평가
사업실적 기여도	연구비 주주실적	<u>연구비입금액 기준</u> 사업단평균	-총 기여도 상대평가의 10% 로 평가
	SCI(E) 논문	<u>SCI(E) 논문환산편수</u> 사업단평균	-주저자(1), 공동저자(0.5)로 가중치 반영 JCR 상위 10 %: 가중치(x3) JCR 상위 20 %: 가중치(x2)
	특허실적	<u>특허환산건수</u> 사업단평균	-등록(1), 출원(0.5)로 가중치 반영 국제특허: 가중치(x3)
	기술이전 실적	<u>입금액 기준</u> 사업단평균	- 기술이전비는 학교에 입금된 실적으로 평가 -창업실적 있을 시 총 기여도 평가의 최대 10%까 지 추가반영
	창업실적	추가 점수	
사업팀 운영봉사 기여도 (30%)	사업팀장, 부장	총 평가의 최대 30%까지 반영	-사업팀장의 정성평가 반영
	사업팀 운영 봉사	총 평가의 최대 20%까지 반영	

[첨부3] 참여대학원생 업적 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사업단 평가점수	비고
연구	논문실적	국제SCI(E)논문 JCR 상위 20 %: 편당 8점 JCR 상위 50 %: 편당 6점 그 외: 편당 4점	-주저자의 경우 평가점수의 100%, 그 외 공동저 자의 경우 50%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의미함.
	학술발표	국제학술대회: 건당 2점 국내학술대회: 건당 1점	
	특허실적	국제특허출원: 건당 2점(등록은 6점) 국내특허출원: 건당 1점(등록은 3점)	-학생 개인명의 특허 불인정 (BK사업실적인정기준에 의해 기관출원만 인정)
	학술연구수상	국제학술대회 학술상: 건당 2점 국내학술대회 학술상: 건당 1.5점 기타 학술상: 건당 1점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4개국 이상 참석, 총 구두 발표논문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국제학 회를 의미함. -국내학술대회라 함은 전국규모 전문학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의미함. -기타 학술상은 상기 학술대회 이외의 모든 학술 상을 의미함.
교육	교과성적	평점 4.3 ~ 4.5 : 3점 4.0 ~ 4.29 : 2점 3.8 ~ 3.99 : 1점	-금년 1, 2학기 성적 -금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이전학기 평균성적으 로 대체함.
	해외연수실적(장,단기)	장기해외연수: 횟수 × 3점 단기해외연수: 횟수 × 1.5점	-단기해외연수: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학술 대회 및 국제공동세미나, 워크샵 등에 참석하는 경우 -장기해외연수: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외 우수 연구실에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제 적 수준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정규교육프로그램 참여 수 × 1점 비교과 특강 참여 횟수 × 0.5점	-사업팀이 주관하는 정규필수교육프로그램(융합세 미나 등)을 수강하고 있거나 비교과 특강 및 세 미나를 수료한 건수(비교과 특강 참여 점수는 제 한을 둘 수 있음)
	산학 협력	창업관련 활동 [학생창업 10점]	-창업관련 활동은 운영위원회 판단으로 결정
봉사	교외봉사	학술대회 토론: 횟수 × 1점 신문(잡지)투고 및 방송출연: 횟수 × 1점	-기타 사업팀 홍보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교외봉사로 인정
	교내봉사	학부/대학원 교육봉사: 개월 수 × 0.2점 사업팀 업무봉사: 건수 × 1점	-사업팀장이 인정하는 각 실험실 BK업무 담당 학 생 1인 -사업팀장이 인정하는 평가 관련 봉사자 전원 -당해년도 업무량에 따라 사업단장이 가중치부여
기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관련	-	-사업팀의 자체평가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정성 평가 실시

[첨부4]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규정

가. 매해 사업연차기간 (3. 1 ~ 다음해 2. 28) 기간 동안 교수별 교육 연구부분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팀 운영에 관한 봉사실적을 평가 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사업팀 사업추진 실적 부문

- 참여교수 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업적을 평가하고 실적 순위에 따라 가, 나, 다로 구분한다.
- 각 등급 해당자 수는 등급별 2~3명 정도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팀장이 당해 사업실적을 평가 명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등급별 성과급 지급은 최우수의 경우도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사업팀장은 규정된 내용 이외에 특별히 사업팀 실적을 향상시킨 우수 교수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사업팀 운영봉사 부문

- 사업팀 운영에 관한 업적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팀장이 운영에 참여한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한다.
- 사업팀 운영봉사 성과급 지급은 사업팀장의 정성적 평가로 결정한다.

[첨부5]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지급기준

가. 사업팀장은 TIPS 참여학생 수 대비 사업팀 장학금예산, 참여교수 연구실의 운영상황에 따라 TIPS 지원학생 후보를 적절히 선정할 수 있다.

나.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지급기준은 참여대학원생 수 기준 70% 배분(지원금액 비례를 고려하여 석사 0.5, 박사 1의 가중치), 연구실적 기준 30% 배분(BK기준과 동일한 평가로 점수 비중에 따라 배정하며 사업팀 운영 기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함) 하며 두 방식 합산금액의 90%이상 지원되도록 인원을 결정한다.

다. 1인당 지원 최소금액은 석사과정 1-4학기 및 석·박사통합 1-4학기: 70만원/월, 박사과정 1-8학기 및 석·박사통합 5-12학기: 130만원/월 으로 한다. 박사과정 수료생은 최소 100만원/월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라. 학기 중 신분 변경 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휴학, 자퇴 등)에는 BK21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며 학기 중 연구소 파견 등 기타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나 재학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연구실 내 다른 참여대학원생으로 대체 지원이 가능하다.

마. 사업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업적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적절한 경쟁체제를 유지한다.

[첨부6] 국제협력경비 지원 지침

Intelligence 기반 정밀 부품·장비 시스템엔지니어양성 사업팀
대학원생 국제협력경비 지원 세부지침

1. 목적: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참가활동을 장려하고 장단기해외 연수 등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한다.

2. 국제화 경비 집행은 상위 규정('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르며, 아래의 각 세부 조항에 따라 집행한다.

3. 국제학술대회

①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의 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저명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대학원생에게 항공료, 학회 등록비, 체제비 등 제반 경비를 본교 국외 여비 규정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사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판작 10편 이상, 출판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② 저명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구두 발표하는 대학원생에 한하여 출장비(항공료, 체제비)와 학회 등록비를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회의 경우 구두 발표(실시간 구두발표, 동영상 발표)를 하는 경우 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저자인 참여지도교수의 경우 구두발표 대학원생을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③ 출장 여비(항공료, 체제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⑤ 예산에 비해 국제학술대회 참가 희망자가 많은 경우 연구업적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⑥ 학회참가 전 출장신청을 하고, 학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및 Boarding pass, 여권사본을 제출해야한다.

4. 장단기 해외연수

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대학 저명교수의 지도나 해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선발 기준은 학점 3.0 이상, SCI 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능력과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박사학위 논문 준비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신청서, 연수계획서, 참여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사업팀장이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제비(공무원 여비규정)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상자는 연수 종료 후 증빙서류, 상세 활동 내역 및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5. 해외학자 초빙

① 사업팀의 국제협력연구 및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공동연구수행, 자문, 세미나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해외학자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사업팀에 신청하고 사업팀장은 연구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제비, 자문료, 강사료, 회의수당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의 지급기준을 따라 집행한다.